

국제 화장품 규제 업데이트 뉴스레터

2026년
06월

아르헨티나, 화장품 금지 및 제한 성분 목록 업데이트

2026년 5월 21일, 아르헨티나 의약품·식품·의료기기 국가관리국(Argentina's National Administration of Drugs, Food and Medical Devices, ANMAT)은 행정명령 Order No. 2599/2026 및 Order No. 2601/2026을 발표하여, Mercosur/GMC 결의안 제06/2025호 및 제07/2025호를 자국 화장품 법규에 반영하였다.



1. 금지 성분 목록

금지 성분 목록 13개 성분 추가, 2개 성분 수정, 5개 성분 삭제로 개정했다. 이미 시판 허가를 받은 제품 중 이번 개정안의 영향을 받는 제품의 경우, 해당 명령의 공포일로부터 12개월의 유예 기간이 주어진다. 단, Butylphenyl Methylpropional(CAS No. 80-54-6) 과 Hydroxyisohexyl 3-Cyclohexene Carboxaldehyde(CAS No. 31906-04-4/51414-25-6) 의 경우에는 18개월의 유예 기간이 적용된다.

상태	참고번호	물질	CAS No.	EC No.
추가	1405	Diboron trioxide; boric oxide	1303-86-2	215-125-8
개정	178	4-Benzyloxyphenol, 4-methoxyphenol and 4-ethoxyphenol	103-16-2 / 150-76-5 / 622-62-8	203-083-3 / 205-769-8 / 210-748-1
삭제	302	Benzoyl peroxide	94-36-0	202-327-6

(※ 전체 20종 중 3종 / 전체 목록은 출처 원문 참조)

2. 제한 성분 목록

제한 성분 목록은 기존 26가지 물질에서 총 194개의 번호가 매겨진 항목으로 확장하고, 최신 과학적 근거에 따라 사용 조건을 업데이트하며, 기존 항목에 INCI 명칭과 CAS 번호를 추가했다. 시판 허가를 받았고 이번 개정의 영향을 받는 제품에 대해서는 명령 공포일로부터 24개월의 유예 기간이 적용된다.

변경 사항에 대한 간략한 개요는 다음과 같다

상태	참조번호	화학명/INCI명	CAS NO.	적용 범위	최대 농도	기타	사용 조건 및 경고 표시
추가	14	Hydroquinone	123-31-9	인공 손톱	0.02%	전문가용	피부 접촉을 피하십시오 사용 설명서를 주의 깊게 읽으십시오. 전문가용으로만 사용하십시오
	132	Benzoyl peroxide	94-36-0		0.7%		
삭제	46	ketoconazole	/	바듬-방자-제품	1%	/	/

(※ 전체 목록은 출처 원문 참조)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해주세요.

URL: <https://cosmetic.chemlinked.com/news/cosmetic-news/argentina-updates-lists-of-prohibited-and-restricted-cosmetic-ingredients>

태국, 화장품 내 피페로날 사용 관련 규정 발표

2026년 5월 21일, 태국 보건부(Ministry of Public Health, MOPH)는 태국 관보(Royal Thai Government Gazette)를 통해 피페로날 오용을 방지하기 위해 화장품에 피페로날을 사용하는 것에 대한 규제를 공지했다.

공지에 따르면, Heliotropine 또는 1,3-benzodioxole-5-carbaldehyde로도 알려진 피페로날(CAS No. 120-57-0)은 다음 조건을 준수하는 경우 완제품에서 최대 1% 농도로 모든 종류의 화장품에 사용할 수 있다.



- 원료 내 피페로날 농도 10% 초과해서는 안 된다.
- 피페로날을 함유한 원료는 향료 또는 피부 컨디셔닝 목적으로만 사용할 수 있다.

다음 조건을 준수하지 않을 시 태국에서 제조, 수입 또는 판매가 금지된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해주세요.

URL: <https://cosmetic.chemlinked.com/news/cosmetic-news/thailand-issues-new-regulations-on-the-use-of-piperonal-in-cosmetics>

태국, 마이크로니들 화장품 규제 확정

2026년 5월 21일, 태국 보건부(Ministry of Public Health, MOPH)와 화장품 위원회(Cosmetic Committee)는 마이크로니들 화장품 규제 체계를 확립하는 3건의 고시를 태국 관보에 게재했으며, 해당 고시는 2026년 5월 22일 발효됐다.



원칙적 금지: 마이크로니들 화장품 및 바늘 모양 결정 구조 함유 화장품은 태국 내 제조·수입·판매 금지

예외 허용: 안면·신체용 녹는 마이크로니들 패치 (바늘 길이 $\leq 100\mu\text{m}$), 수출 전용 제품

필수 경고문(허용 제품 라벨)

- 본 제품은 알레르기 반응이나 피부 자극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사용 전 패치 테스트를 실시하십시오.
- 사용 후 이상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사용을 중단하고 의사 또는 약사와 상담하십시오.
- 피부가 얇은 부위, 민감한 부위, 입술 또는 염증, 염증성 여드름, 개방성 상처, 찰과상, 자극 받은 피부와 같은 비정상적인 피부 상태에는 사용하지 마십시오.
- 눈 주위는 피해주세요.
- 15세 미만 어린이에게는 사용하지 마십시오
- 매일 사용하는 것은 권장하지 않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해주세요.

URL: <https://cosmetic.chemlinked.com/news/cosmetic-news/thailand-mandates-warning-labels-for-dissolving-microneedle-patch-cosmetics>

미국 메릴랜드주, 화장품 성분 규제 및 단속 강화

2026년 4월 28일, 메릴랜드 주지사(Governor of Maryland)는 화장품 성분 규제를 강화하는 Crown and Care Act(Senate Bill656 / House Bill 1533)를 법률로 제정했다. 이 법안은 화장품에 사용 금지 물질 목록을 확대하고, 규제 당국에 더 강력한 집행 권한을 부여하며, 위반 시 강화된 민사 처벌을 실시한다. 본 법안은 메릴랜드주의 2021년 법안(HB 643)을 기반으로 하며, 이는 캘리포니아 무독성 화장품법(California's Toxic-Free Cosmetics Act)과 정합한다. 법안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금지 성분 확대]

기존 24가지 유해 물질(프탈레이트, 포름알데히드 및 방출 물질, 수은, 13가지 PFAS 등)에 더하여 납(Lead, CAS No. 7439-92-1)이 신규 추가되었다.

기존 규정 (HB 643)	신규 규정 (Crown and Care Act)
Dibutyl Phthalate (CAS No. 84-74-2)	Dibutyl Phthalate (CAS No. 84-74-2)
Diethylhexyl Phthalate (CAS No. 117-81-7)	Diethylhexyl Phthalate (CAS No. 117-81-7)
Formaldehyde (CAS No. 50-00-0)	Formaldehyde (CAS No. 50-00-0)
Paraformaldehyde (CAS No. 30525-89-4)	Paraformaldehyde (CAS No. 30525-89-4)
Methylene Glycol (CAS No. 463-57-0)	Methylene Glycol (CAS No. 463-57-0)
Quaternium-15 (CAS No. 51229-78-8)	Quaternium-15 (CAS No. 51229-78-8)
Mercury (CAS No. 7439-97-6)	Mercury (CAS No. 7439-97-6)
Isobutylparaben (CAS No. 4247-02-3)	Isobutylparaben (CAS No. 4247-02-3)
Isopropylparaben (CAS No. 4191-73-5)	Isopropylparaben (CAS No. 4191-73-5)
m-Phenylenediamine and Its Salts (CAS No. 108-45-2)	m-Phenylenediamine and Its Salts (CAS No. 108-45-2)
o-Phenylenediamine and Its Salts (CAS No. 95-54-5)	o-Phenylenediamine and Its Salts (CAS No. 95-54-5)
13 types of PFAS	Lead (CAS No. 7439-92-1) and 13 types of PFAS

[강화된 법 집행 및 민사 책임]

위반은 '불공정·악의적·기만적 거래 관행'으로 분류되며, 피해자는 발견일로부터 3년 이내 민사 소송 가능. 법원은 3배 손해배상, 징벌적 손해배상, 변호사 비용 지급 판결 가능.

[확대된 검사 및 샘플링 권한]

메릴랜드 보건부(Maryland Department of Health)에 사업장 출입·검사·샘플링 권한 부여.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해주세요.

URL: <https://cosmetic.chemlinked.com/news/cosmetic-news/maryland-strengthen-cosmetic-ingredient-restrictions-and-enforcement>

아르헨티나, 금지 화장품 물질 목록에 TPO, DMPT 추가

2026년 5월 15일, 아르헨티나 의약품·식품·의료기기 국가관리국 (Argentina's National Administration of Drugs, Food and Medical Devices, ANMAT)은 메르코수르/GMC/결의안 제27/2025호를 자국 내에 발효시키는 명령 제2820/2026호를 발표했다. 이 명령은 금지된 화장품 성분 목록을 업데이트하였다.



아르헨티나의 화장품 규제 체계에 따라, 법령 제6433/2015호는 화장품에 사용 금지된 물질 목록(약 1,400개 항목)을 규정하고 있다. 새로 채택된 법령은 이 목록에 Trimethylbenzoyl diphenylphosphine oxide(TPO)와 N,N-dimethyl-p-toluidine(DMPT) 두 가지 물질을 추가하여 개정했다. 이 물질들에 대한 정보는 아래 표에 나와 있다.

No.	물질	CAS 번호	EC 번호
1418	Trimethylbenzoyl diphenylphosphine oxide	75980-60-8	278-355-8
1419	N,N-dimethyl-p-toluidine	99-97-8	202-805-4

본 명령은 공포일로부터 60일의 유예기간을 둔다. 이 기간 안에 이미 시장에서 판매 중인 제품들도 새로운 규정을 충족해야 한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해주세요.

URL: <https://cosmetic.chemlinked.com/news/cosmetic-news/argentina-expands-list-of-prohibited-cosmetic-substances-to-include-tpo-and-dmpt>

Provided by

CHEMLINKED



REACH24H



CONTACT

Email: korea@reach24h.com

Phone: 02-6245-1610

일본, 헤나 함유 헤어 화장품 관련 지침 업데이트

2026년 5월 20일, 일본 후생노동성(Japan's Ministry of Health, Labour and Welfare, MHLW)이 헤나 유래 성분을 함유한 헤어 화장품에 대한 안전 기준을 강화하는 고시를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산화 염료(oxidation dyes)를 함유한 헤나 제품과 관련된 아나필락시스(Anaphylaxis) 사례를 기록한 일본 소비자보호센터(National Consumer Affairs Center of Japan, NCAC)의 조사 결과, 일부 해당 제품은 포장에 알레르기 위험 및 패치 테스트에 대한 주의 정보가 부족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수정 사항]

본 고시는 신규 성분 규제를 도입한 것이 아니라, 헤나 유래 물질을 함유한 헤어 화장품에 대한 후생노동성 2006년 9월 고시를 강화한 것이다. 제조업체는 해당 고시에 추가적으로 알레르기 위험에 대한 명확한 경고를 제공하고 사용 전 피부 테스트를 권장해야 한다. 핵심 변경 사항은 참조 규정의 업데이트로, 헤어 염색제·표백제·색소 제거제에 대한 기존 2007년 고시 참조를 현행 2021년 가이드로 대체하였다.

[라벨링 요구사항]

헤나 유래 성분을 함유한 헤어 화장품의 핵심 라벨링 요건은 변경되지 않았지만, 용기 또는 외부 포장에 다음과 같은 주의 사항을 표시해야 한다.

- 제품 사용 후 피부에 자극이 생기거나 피부에 맞지 않는 경우 사용을 중단하십시오.
이전에 염색약으로 인해 알레르기 반응이나 발진을 경험한 적이 있는 사람은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 사용 전에 반드시 피부 테스트(패치 테스트)를 실시하십시오.

또한, 패치 테스트 실시 방법에 대한 자세한 지침은 제품 설명서 또는 기타 첨부 자료에 포함되어야 한다.

[전환 계획]

해당 고시 발표 이후 제조된 제품의 경우, 기업은 필요한 라벨 개정 사항을 가능한 한 빨리, 늦어도 고시 발표 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시행해야 한다. 전환 기간 동안에는 보충 안내문, 스티커 또는 기타 설명 자료를 사용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해주세요.

URL: <https://cosmetic.chemlinked.com/news/cosmetic-news/japan-updates-guidance-on-henna-containing-hair-cosmetics-following-allergy-incident-reports>

Provided by

CHEMLINKED



REACH24H



CONTACT

Email: korea@reach24h.com

Phone: 02-6245-1610